

2021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제주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제품 완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1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는 기한 내에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일
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0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1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
- 모집기간 : 2021년 03월 02일(화) ~ 04월 09일(금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- 사업수행기간 : 2021년 04월 ~ 21년 08월 31일
- 지원규모 : 과제별 컨소시엄(협력체계) 구성 15건 내외
- 참여기업 :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기업
- 수 행사 :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디자인전문회사
- 지원금액 : 과제당 상이
- 브랜드디자인(BI·CI) : 최대 1,000만원 이내
- 제품 패키지디자인 : 최대 1,300만원 이내
-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 지원(보조금 90%, 참여기업 부담10%)
* 사업비는 VAT 제외, 부가가치세는 디자인전문회사 부담
- 신청방법 : 컨소시엄(협력체계:참여기업↔수행사)을 구성하여 지원과제 신청
- 지원분야 및 내용

구분	지원과제	지원한도	기준분량
참여기업	브랜드 디자인(BI·CI)	1,000만원	기본+응용시스템 및 메뉴얼북
	제품 패키지 디자인	1,300만원	제품 1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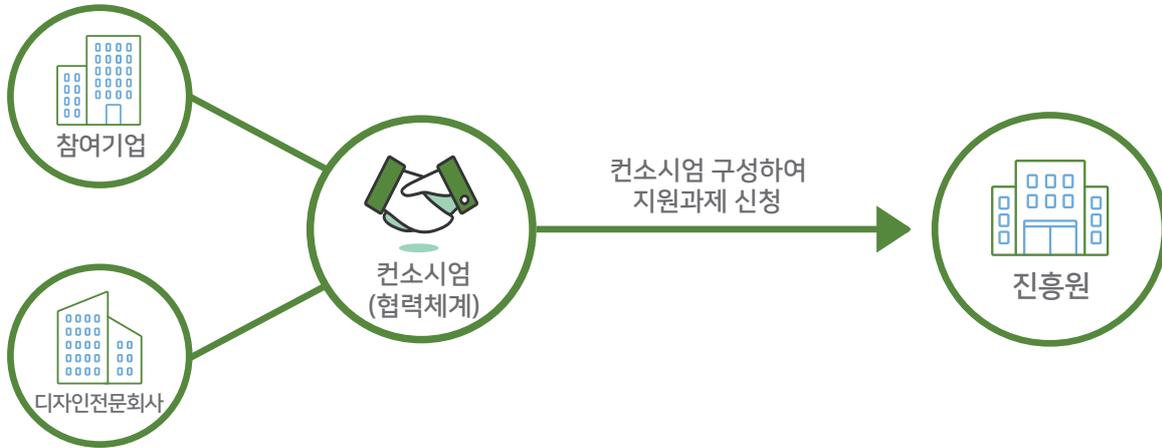
※ 참여기업 1사당 1개 지원 과제 선택
※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BI·CI가 있는 업체를 권고함

구분	수행규모	수행내용
디자인전문회사	2개사 이내	브랜드 디자인(BI·CI), 제품 패키지 디자인

※ 디자인출원필수, 지원금의 150만원 이내로 사용
※ 디자인 목업제작비(출력,포장)는 지원금의 15%이내

02 신청형태

- 컨소시엄(협력체계 : 참여기업 ↔ 디자인전문회사)을 구성하여 지원과제 신청
 - 참여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가 협력하여 신청 및 참여신청서,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



03 신청자격

- 컨소시엄(협력체계 : 참여기업 ↔ 디자인전문회사)을 구성하여 지원과제 신청
 - 참여기업
 - 공고일 현재 제주에서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 -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 "제조업"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기업
 - 디자인전문회사
 - 공고일 현재 제주에서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둔 디자인전문회사*
 -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디자인전문회사*
 - *시각, 포장, 멀티미디어, 서비스디자인, 제품디자인 분야에 신고(등록)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

※ 지원제외 대상

- 동일 사업 내용으로 '18 ~ '20년도 제주자치도 및 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을 지원받은 업체(참여기업만 해당)
- 접수 마감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업체
- 정부출연과제, 타기관 기지원과제는 선정 제외

04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 03. 02.(화) ~ 04. 09.(금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(toyou3231@jba.or.kr) 제출
- 제출서류
 - 참여 신청서는 스캐닝 후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

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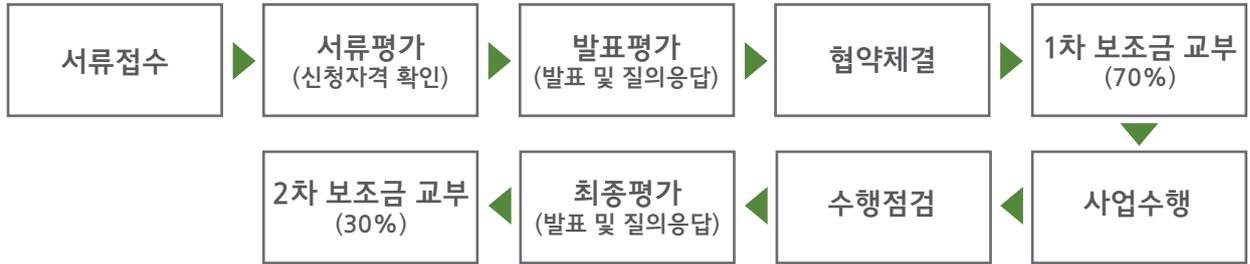
구분	서류명	참여기업	디자인전문회사
①	디자인 사업 참여 신청서	○	○
②	세부 사업계획서	○	○
③	제품 설명서	○	
④	가점 증명 서류 (각 2점, 최대 10점) (공동상표 제주마쌈, JQ, 제주화장품인증, 여성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장애인기업, 성장유망중소기업)	○	
⑤	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동의서	○	○
⑥	최근 3년간 매출실적증빙서류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	○	○
⑦	사업자등록증 사본	○	○
⑧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○	○
⑨	전문인력 보유현황		○
⑩	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		○
⑪	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		○
⑫	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	○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- 문의처 :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상품기획팀 064)805-3358

05 진행절차

○ 진행절차



○ 서류평가 : 도내 사업자, 업종·업태, 신청자격 제외사항 등 신청자격 확인

* 신청자격 미충족, 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
06 발표평가

○ 발표평가 : 발표 및 질의응답 '21년 4월 예정 (일정 별도 공지)

- 관련 외부 전문가 5인 이내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
- 발표시간 기본 5분,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되며 관련 2인 참석하여 발표 진행

○ 발표과제 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과제평가	상품성	시장 경쟁력 및 마케팅 전략	15점
	사업필요성	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	20점
	수행계획의 우수성	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	15점
	활용전략	결과물 활용 전략 및 기대효과	20점
	소계		
수행평가	컨소시엄 역량*	브랜드·기업 매출규모 및 디자인 수행실적 등	15점
	디자인 수행 역량	개발물 실적 수준	10점
	사후관리	사후관리 계획 등	5점
	소계		
합계			100점

※ 가점 : JQ인증, 제주화장품인증, 공동상표제주마쌈 제품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성장유망 중소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(각 2점, 최대 10점)

※ 컨소시엄 역량은 서면평가로 진행

07사업 수행점검

○ 사업 수행점검

- 점검 시기 : 2021년 7월 (세부 일정 변경 될 수 있음)
 - 점검 방법 : 디자인전문회사 방문 점검
 - 점검 내용 :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점검(사업 계획서 이행여부 등)
 - 점검자 : 경제통상진흥원 사업담당자 외
- ※ 점검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

07최종평가

○ 최종평가 : 발표 및 질의응답 '21년 8월 예정 (일정 별도 공지)

○ 평가대상 : 선정과제 전체

- 최종평가위원회 :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
- ※ 심사위원 구성 시 선정평가위원회 명단을 우선순위로 구성
- 최종평가 발표시간 기본 5분, 질의응답 5분 내외

○ 최종평가 기준

구분	평가지표	배점
개발 진행과정의 적합성	목표시장의 상황(타겟 소비자 및 경쟁사) 등 분석 적용 정도 예산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	20점
결과물의 타당성	디자인 컨셉 및 개발방향에 타당한 결과물(용도, 특성) 디자인 창작성 발휘정도(신규성, 유사성, 창조성, 용이성)	30점
사후관리의 적합성	산업재산권 취득 결과물 활용도(참여기업 및 제품 활용 여부)	20점
기대효과	경제적 파급효과(매출 및 시장진입 효과 등)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매출 상승 등 참여기업의 성장 및 파급효과	30점
합계		100점

08결과물 제출

○ 제출과제

- 공통 : 디자인개발 결과보고서(최종 결과물 이미지 8컷 이상, 디자인출원증명원 포함),
 사업비 사용내역서
 - 브랜드디자인(BI·CI) : 메뉴얼북(Basic & Application System)
 - 제품 패키지디자인 : 디자인 Mock-up 또는 Working Mock-up
- ※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“실패” 평가로 간주
(지원금 환수, 잔여 지원금 지급 중단, 과제참여 제한)

09 사후조치

○ 등급별 차등조치

평가구분	평가등급	평가기준	사후조치내용(본 사업에 한함)
성공	SS등급	상위 1 ~ 3위	차년도 지원사업 과제수행 +1 추가수행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	S등급	심사결과 평균 90점 이상	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평가 가점 +2점 부여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성실이행	A등급	심사결과 평균 80 ~ 89점	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평가 가점 +1점 부여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보통	B등급	심사결과 평균 60 ~ 79점	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불성실 & 실패	C등급	심사결과 평균 59점 이하	동사업 향후 1년간 참여 제한(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) 최종 개발지원비의 50% 지급

10 사업비교부

○ 보조금 교부 :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예치 확인 후 디자인전문회사에 지급

- 1차 교부 : 협약 체결 후 70% 지급(5월)
- 2차 교부 : 최종 평가 후 30% 지급 (※평가 결과별 차등지급 / 8월)

※ 사업비 목적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적발 시 진흥원 관련 지원 사업 향후 3년간 참여 제한

○ 사업비 지급 절차

- ① [기업부담금] 협약 후 7일 이내 보조금의 10% 선금 지급 (참여기업 → 디자인전문회사)
 - ② [1차 교부금] 1차 교부신청서 작성 후 기업지원금의 70% 지급 (진흥원 → 디자인전문회사)
 - ③ [2차 교부금] 최종평가 후, 나머지 기업지원금 30% (진흥원 → 디자인전문회사)
- * 부가가치세는 디자인전문회사 부담

☞ 개발비용 최대금액 예시

구분	총사업비 ㉑ + ㉒ + ㉓	㉑ 신청지원금	㉒ 기업부담금	㉓ 부가가치세 (㉑ + ㉒) X 10%
브랜드디자인	12,100,000	10,000,000	1,000,000	1,100,000
패키지디자인	15,730,000	13,000,000	1,300,000	1,430,000

* 총 사업비 = 개발비(지원금 + 기업부담금) + 부가가치세

** 부가가치세 = 디자인전문회사 부담

보조사업 유의사항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안내 후)

- 교부신청서를 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) 제출합니다.
- 사업계획서를 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) 제출합니다.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합니다.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합니다.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있습니다.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상품기획팀 (☎064-805-335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발표평가 세부 평가항목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지표	배점
과제평가	상품성	제품 (브랜드)의 시장 경쟁력	5
		제품 (브랜드)의 마케팅 전략	10
	사업 필요성	디자인 개발 (개선) 필요성	10
		디자인 개발 (개선) 시급성	10
	수행계획의 우수성	수행계획의 체계성, 구체성	10
		실현가능성	5
	활용 전략	개발 결과물의 활용 전략	10
		기대효과	10
소 계			70점
수행평가	컨소시엄 역량	서면평가 (*.별첨 2)	15
	디자인 수행 역량	디자인 개발물 실적 수준	5
		투입인력 전문성	5
	사후 관리	사후관리의 적정성	5
소 계			30점
합 계			100점

컨소시엄 역량 서면평가표

구분	요소	평가항목	세부 평가내용	배점	
참여기업역량	경영성과	○ 기업의 경영성과 적정성 (기업매출규모)	- 매출액 3억 이상 (2.5) - 매출액 2억 ~ 3억 미만 (2.0) - 매출액 1억 ~ 2억 미만 (1.5) - 매출액 1억 미만 (1.0)	2.5	5
			- 매출액 증가율 15%이상 (2.5) - 매출액 증가율 10%이상 ~ 15%미만 (2.0) - 매출액 증가율 7%이상 ~ 10%미만 (1.5) - 신생기업 또는 7% 미만 (1.0) <small>*매출액 증가율 = (20매출액 - '19매출액) / '19매출액 × 100</small>	2.5	
디자인 전문회사역량	경영성과	○ 기업의 경영성과 적정성 (기업매출규모)	- 매출액 3억 이상 (2.5) - 매출액 2억 ~ 3억 미만 (2.0) - 매출액 1억 ~ 2억 미만 (1.5) - 매출액 1억 미만 (1.0)	2.5	5
			- 매출액 증가율 15%이상 (2.5) - 매출액 증가율 10%이상 ~ 15%미만 (2.0) - 매출액 증가율 7%이상 ~ 10%미만 (1.5) - 신생기업 또는 7% 미만 (1.0) <small>*매출액 증가율 = (20매출액 - '19매출액) / '19매출액 × 100</small>	2.5	
	지원역량	○ 전문인력 보유현황	- 10명 이상 보유 (1.0) - 5명 ~ 10명 미만 (0.8) - 3명 ~ 5명 미만 (0.6) - 3명 미만 (0.4) ※ KODIA 디자이너경력관리 확인서 대체 가능	1	5
	수행경험	○ 사업수행 경력	- 3년 이상 (1.5) - 1년 이상 ~ 3년 미만 (1.0) - 1년 미만 (0.5)	1.5	
주요실적	○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대상기간 : '18.1.1~20.12.31. (단, 용역 완료일 기준) 증빙인정범위 ①용역이행실적증명서 ②계약서 +세금계산서 ③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기술 용역표준계약서 또는 협약서	- 10개 이상 (2.0) - 5개 ~ 10개 미만 (1.5) - 2개 ~ 5개 미만 (1.0) - 1개 (0.5) - 0개 (0)	2		
		○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수상실적	- 2건 이상 (0.5) - 1건 (0.3) - 0개 (0.0)	0.5	
합 계				15	